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광역 소방행정체계 전환에 따라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체제를 정비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시·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조례명칭 개정
 - 시·군조례 → 도조례
- 추천권자 및 인원 조정(제3조)
 - 추천권자 : 소방서장, 읍·면장 → 의용소방대장(부녀대, 지역대 포함)
 - 추천범위 : 장학생수 2배수 범위 → 의용소방대 1개대당 2명 범위내
- 선발권자 조정(제4권)
 - 선발권자 : 시장, 군수 → 소방서장, 군수
 - 결과보고(신설) : 소방서장, 군수 → 도지사
- 장학생 정원조정(제5조)
 - 소방서, 군당 15명
 -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원수에 따라 차등조정(최대 25명)
(대원 60~110명 기준 10명, 20명당 1명증원)
- 장학금 지급절차(제7조) : 시·군예산 → 도 예산
- 지급정지 사유보고자 조정(제8조)
 - 소방서장, 읍·면장이 시장·군수에게 보고
→ 소방서장·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

- 장학생의 관리권자 조정(제9조)
 - 시장, 군수 → 소방서장, 군수
-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기관조정(제10조)
 - 설치권자 : 시장·군수 → 도지사
 - 설치기관 : 시·군 → 도
- 경과규정 신설(부칙 제2조)
 - 시·군 조례선발 장학생 → 도 조례 선발 장학생으로 간주

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(참조)